

2026. 1. 1
제 1727 호



**법원
연보**

법원행정처

법원공보

2026년 1월 1일(목요일)

제1727호

CONTENTS

● 규칙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4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4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17
● 내규	법원기록보존소 기록물평가심의회 내규 일부개정내규	22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24
● 신법령 목록		27



◆ 2026년도 대법원 시무식

2026년도 대법원 시무식이 2026. 1. 2.(금)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재경 각급 법원장, 재경 각급 법원 판사 및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규칙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232호 2025. 12. 24. 공포)

제1조(목적) 2026년 9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이하 “아·태 회의”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아·태 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아·태 회의의 준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아·태 회의의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 1인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 ③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법원장 비서실장
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3.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4.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5.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6.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7. 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장
8.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법관 또는 관계 전문가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및 대변인) ① 준비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준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대외적인 발표를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대변인을 둔다.

② 간사는 준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고, 대변인은 법원행정처 공보관이 된다.

제7조(준비기획단) ① 아·태 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준비기획단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태 회의 개최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2. 아·태 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관련 국가와의 협의
3. 아·태 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의제 개발·정리
4. 아·태 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
5. 아·태 회의 개최에 필요한 예산의 수립 및 집행
6. 아·태 회의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
7. 아·태 회의 개최 홍보, 기자실 운영 및 내외신 취재지원 업무
8. 아·태 회의의 사후 정리·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아·태 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준비기획단의 구성) ① 준비기획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준비기획단장은 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장으로 하고, 준비기획단 간사는 법원행정처 국제심판관으로 한다.

③ 준비기획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준비기획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준비기획단장은 준비기획단의 사무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일부를 준비기획단 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준비기획단에 운영총괄과, 행사기획과를 둔다.

제9조(실무조정회의) ① 준비기획단의 업무 진전사항을 실무적으로 점검·조정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② 실무조정회의는 준비기획단장이 주재하며, 실무조정회의 참석자는 준비기획단 간사를 포함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법관 또는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법원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자문단) 아·태 회의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법관 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계약직 공무원 또는 조사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준비위원회의 위원,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준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33호 2025. 12. 24. 공포)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법원공무원정원표

(단위: 명)

총 계	14,958
경력직 계	14,919
특정직 계	55
법원행정처장	1
법원행정처차장	1
사법연수원장	1
사법연수원부원장	1
법원공무원교육원장	1
사법연수원 교수	50
일반직 계	14,864
법원관리관(1급)	1
법원이사관(2급)	21
이사관(2급)	1
법원부이사관(3급)	70
법원부이사관(3급) 또는 전산부이사관(3급)	1
기술부이사관(3급)	1
법원부이사관(3급) 또는 법원서기관(4급)	20
법원서기관(4급)	392
법원서기관(4급) 또는 비서관(4급상당)	1
법원서기관(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3

법원서기관(4급) 또는 조사서기관(4급)	2
전산서기관(4급)	2
기술심리서기관(4급)	15
기술조사서기관(4급)	5
사서서기관(4급)	2
기술서기관(4급)	2
서기관(4급)	1
법원서기관(4급) 또는 법원사무관(5급)	166
전산서기관(4급) 또는 전산사무관(5급)	2
기술서기관(4급)·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1
기술서기관(4급)·기계사무관(5급)·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1
기술조사서기관(4급) 또는 기술조사사무관(5급)	8
법원사무관(5급)	1,136
법원사무관(5급) 또는 등기사무관(5급)	34
법원사무관(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3
법원사무관(5급) 또는 조사사무관(5급)	74
전산사무관(5급)	13
통계사무관(5급)	1
경위사무관(5급)	7
기술심리사무관(5급)	2
기술조사사무관(5급)	10
사서사무관(5급)	6
통역사무관(5급)	1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5
기계사무관(5급) 또는 전기사무관(5급)	5
화학사무관(5급) 또는 보건사무관(5급)	1
법원주사(6급)	1,905
법원주사(6급) 또는 등기주사(6급)	153
조사주사(6급)	49
전산주사(6급)	56
통계주사(6급)	1
전산주사(6급) 또는 통계주사(6급)	1
경위주사(6급)	40
사서주사(6급)	26
토목주사(6급) 또는 건축주사(6급)	7
기계주사(6급) 또는 전기주사(6급)	13
보건주사(6급)	1
화학주사(6급)	2
행정주사(6급) 또는 속기주사(6급)	39
관리주사(6급)	1
법원주사보(7급)	1,502
법원주사보(7급) 또는 등기주사보(7급)	144
조사주사보(7급)	110
전산주사보(7급)	27
통계주사보(7급)	1
경위주사보(7급)	34

사서주사보(7급)	13
토목주사보(7급) 또는 건축주사보(7급)	2
기계주사보(7급) 또는 전기주사보(7급)	6
보건주사보(7급)	5
행정주사보(7급) 또는 속기주사보(7급)	86
관리주사보(7급)	2
보안주사보(7급)	1
보안관리주사보(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29
법원서기(8급)	2,778
법원서기(8급) 또는 등기서기(8급)	269
전산서기(8급)	22
통계서기(8급)	4
경위서기(8급)	144
사서서기(8급)	14
건축서기(8급)	2
기계서기(8급)	6
전기서기(8급)	14
화학서기(8급)	1
행정서기(8급) 또는 속기서기(8급)	56
관리서기(8급)	3
전기운영서기(8급)	4
환경서기(8급)	1
병기서기(8급)	1

보안서기(8급)	2
보안관리서기(8급)	32
보안관리서기(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77
법원서기보(9급)	1,526
법원서기보(9급) 또는 등기서기보(9급)	180
전산서기보(9급)	14
통계서기보(9급)	2
전산서기보(9급) 또는 통계서기보(9급)	1
경위서기보(9급)	7
사서서기보(9급)	8
건축서기보(9급)	5
기계서기보(9급)	47
전기서기보(9급)	14
보건서기보(9급)	2
행정서기보(9급) 또는 속기서기보(9급)	2,228
관리서기보(9급)	357
기계운영서기보(9급)	8
전기운영서기보(9급)	2
환경서기보(9급)	51
조경서기보(9급)	6
보안서기보(9급)	95
보안관리서기보(9급)	161
보안관리서기보(9급) 또는 별정직(9급상당)	392

기록연구관	2
기록연구사	3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보좌 담당)	8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	2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자료 담당)	1
특수경력직 계	39
정무직 계	3
대법원장 비서실장	1
법원공무원교육원장	1
윤리감사관	1
별정직 계	36
비서관(2급상당)	1
비서관(5급상당)	1
비서(6급상당)	2
비서(7급상당)	14
비서(8급상당)	6
비서(9급상당)	10
사법연수생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34호 2025. 12. 24. 공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

관리위원회 설치법원	서울회생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회생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회생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	--

* 법 부칙에 따라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에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으로서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존된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의 사건기록은 이 규칙 시행 후에는 각각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p> <table border="1" data-bbox="148 552 689 1170"> <tr> <td data-bbox="148 552 349 1170">관리위원회 설치법원</td> <td data-bbox="349 552 689 1170"> 서울회생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춘천지방법원, <u>대전지방법원</u>, 청주지방법원, <u>대구지방법원</u>, 부산회생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u>광주지방법원</u>,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td> </tr> </table> <p>* 법 부칙에 따라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둠</p>	관리위원회 설치법원	서울회생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춘천지방법원, <u>대전지방법원</u> , 청주지방법원, <u>대구지방법원</u> , 부산회생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u>광주지방법원</u> ,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p>[별표 1]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p> <table border="1" data-bbox="732 552 1273 1170"> <tr> <td data-bbox="732 552 933 1170">관리위원회 설치법원</td> <td data-bbox="933 552 1273 1170"> 서울회생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춘천지방법원, <u>대전회생법원</u>, 청주지방법원, <u>대구회생법원</u>, 부산회생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u>광주회생법원</u>,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td> </tr> </table> <p>* 법 부칙에 따라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둠</p>	관리위원회 설치법원	서울회생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춘천지방법원, <u>대전회생법원</u> , 청주지방법원, <u>대구회생법원</u> , 부산회생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u>광주회생법원</u> ,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설치법원	서울회생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춘천지방법원, <u>대전지방법원</u> , 청주지방법원, <u>대구지방법원</u> , 부산회생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u>광주지방법원</u> ,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설치법원	서울회생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춘천지방법원, <u>대전회생법원</u> , 청주지방법원, <u>대구회생법원</u> , 부산회생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u>광주회생법원</u> ,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35호 2025. 12. 24. 공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생산을”를 “생산 또는 접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종료 직후”를 “종료 이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3조제7항”을 “제3조제7호”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된 전자기록물은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른 전자기록물은 검수 및 진본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매년 11월 말까지”를 “매년”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바이러스 검사”를 “전자파일 오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른 전자기록물은 진본확인 절차 및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기록관리현황의 평가)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기록관리현황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실시 대상기관에 평가항목, 기준 및 방식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현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실시 대상기관에 기록관리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매년 3월 말까지”를 “매년”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을 “기록물의 공개·열람 및 활용”으로 한다.

제6장에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기록물의 활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전시를 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기록물의 정리) ① ----- <u>생산을</u>----- -----.</p> <p>② (생 략)</p>	<p>제16조(기록물의 정리) ① ----- <u>생산 또는 접수</u>를-----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기록물분류기준표) ①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작성·운영하며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했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업무명, 단위업무 설명 및 단위업무별 보존기간 등을 법원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 처리과기관코드, 기능분류번호,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제3조제7항에 따른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③·④ (생 략)</p> <p>〈신 설〉</p>	<p>제17조(기록물분류기준표) ① ----- ----- 종료 이후 ----- -----.</p> <p>② -----</p> <p>----- 제3조제7호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24조(기록물의 이관)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는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p>	<p>제23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된 전자기록물은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p> <p>제24조(기록물의 이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현행	개정안
<p>제44조(기록관리현황의 평가) ① <u>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기록관리현황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항목, 기준 및 방식 등을 각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u></p> <p>② <u>각급기관은 당해 기관의 전년도 기록관리현황을 매년 6월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44조(기록관리현황의 평가) ① <u>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기록관리현황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실시 대상기관에 평가항목, 기준 및 방식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u></p> <p>② <u>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현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 실시 대상기관에 기록관리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p>
<p>제50조(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① <u>각급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속 처리과의 전년도 비밀기록물의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u></p> <p>②·③ (생략)</p> <p><u>제6장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u> <u>〈신설〉</u></p>	<p>제50조(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① ----- 매년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제6장 기록물의 공개·열람 및 활용</u> <u>제53조의3(기록물의 활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전시를 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할 수 있다.</u></p>

내규

법원기록보존소 기록물평가심의회 내규 일부개정내규

(법원행정처내규 제140호 2025. 12. 11. 결재)

법원기록보존소 기록물평가심의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 중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을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

-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심의회 구성) ① ~ ③ (생 략)</p> <p>〈신 설〉</p> <p>④ <u>위원 중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⑤ (생 략)</p>	<p>제3조(심의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위촉된 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u>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u>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인 위원</u>----- -----.</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590호 2025. 12. 11. 결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로 하고,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기록관리현황의 평가와 포상)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44조에 따른 기록관리현황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종전의 제39조) 중 “규칙 제23조 제5항”을 “규칙 제52조제5항”으로 하고, 제42조제2항(종전의 제41조제2항) 중 “규칙 제59조 제3항”을 “규칙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 부여신청

1. 발간 등록 시

제 목			
발행기관		주관부서	
발간주기		발간용도	
간행물 유형			
저작물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공개구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비공개 대상정보유형		
	부분공개/비공개사유		
	(부분공개 시)비공개 범위		
전 화		팩 스	
※내용요약			

2. 발간 등록 변경 시

발간등록번호 :		제 목 :	
변 경 내 용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제 목			
발행기관			
발간주기			
용 도			
간행물 유형			
주관부서			
공개구분			
※ 변경사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② (생략) ③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폐기한다.	제32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35조(기록물 평가심의회) ① (생략) 1. ~ 3. (생략) ② 기록물 평가심의회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신설〉	제35조(기록물 평가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조 (생략)	제37조(기록관리현황의 평가와 포상)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44조에 따른 기록관리현황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 (생략)	제38조 (현행 제37조와 같음)
제38조의2 (생략)	제39조 (현행 제38조와 같음)
제39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39조의2 (현행 제38조의2와 같음)
제40조 (생략)	제40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규칙 제52조 제5항----- -----.
제41조(민간기록물 위탁 및 회수) ① (생략)	제41조 (현행 제40조와 같음)
② 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록물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회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민간기록물 위탁 및 회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칙 제58조제3항----- ----- -----.

신법령 목록 (2025. 12. 1 ~ 2025. 12. 15)

법 률

법률제21147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21129	2025. 12. 02.	5
법률제21148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
법률제21149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21150호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
법률제21151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21152호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	10
법률제21153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1
법률제2115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13
법률제21155호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16
법률제2115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23
법률제21157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24
법률제21158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27
법률제21159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31
법률제21160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4
법률제21161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35
법률제21162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6
법률제21163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37
법률제2116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8
법률제21165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40

법률제21166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1129	2025. 12. 02.	41
법률제2116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3
법률제21168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44
법률제2116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1
법률제21170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52
법률제21171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53
법률제21172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	"	54
법률제2117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55
법률제21174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6
법률제2117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7
법률제21176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58
법률제21177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	59
법률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	"	60
법률제21179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4
법률제2118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65
법률제21181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7
법률제2118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68
법률제21183호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72
법률제21184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73
법률제21185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	"	74
법률제21186호	주택도시보증법 일부개정법률	"	"	75
법률제21187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76
법률제21188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77

법률제21189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1129	2025. 12. 02.	78
법률제2119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79
법률제21191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1
법률제21192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85
법률제2119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	"	87
법률제21194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89
법률제21195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91
법률제21196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2
법률제21197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	93
법률제21198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	"	95
법률제21199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 별법	21131	2025. 12. 04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588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129	2025. 12. 02.	96
대통령령제35885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1
대통령령제3588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3
대통령령제35887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5
대통령령제3588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6
대통령령제3588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7
대통령령제35890호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	"	116
대통령령제35891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117
대통령령제35892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120
대통령령제35893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21131	2025. 12. 04.	8
대통령령제35894호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1134	2025. 12. 09.	4
대통령령제35895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35896호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35897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0
대통령령제3589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3589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
대통령령제35900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
대통령령제35901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 개정령	"	"	23
대통령령제35902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137	2025. 12. 12.	5

총리령

총리령제2064호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21130	2025. 12. 03.	4
-----------	------------------	-------	---------------	---

부 령

고용노동부령제454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1128	2025. 12. 0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57호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58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	"	"	10
보건복지부령제1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
행정안전부령제590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
교육부령제370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129	2025. 12. 02.	122
국토교통부령제1538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30
국토교통부령제153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2
문화체육관광부령제617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134
행정안전부령제59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6
국토교통부령제153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131	2025. 12. 04.	9
국토교통부령제154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132	2025. 12. 05.	4
국토교통부령제154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국토교통부령제1542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기획재정부령제1147호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1132	2025. 12. 05.	36
통일부령제140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9
행정안전부령제59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44
보건복지부령제1129호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21134	2025. 12. 09.	24
보건복지부령제1137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	"	30
국토교통부령제1543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1137	2025. 12. 12.	7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10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농림축산식품부령제74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3
보건복지부령제113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6
산업통상부령제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138	2025. 12. 15.	5



2026. 1. 1. 제1727호
Supreme Court of Korea

